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2025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대구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 교류와 생태계 조성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 입주할 블록체인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7.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센터위치 :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 스마트시티센터 2층
- 모집규모 : 입주실 4개실

번호	입주실	전용면적	수용인원	최소 상주 근무인력	입주시기
1	4호실	23.68m ²	4~5인	3인	8월 예정
2	5호실	24.20m ²	4~5인	3인	9월 예정
3	9호실	26.08m ²	4~5인	3인	8월 예정
4	10호실	31.26m ²	6~7인	5인	8월 예정

※ 지원업체 평가순위에 따라 입주호실 우선 배정

□ 모집대상

- 대구시 또는 역외(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서비스 보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 제외대상
 - 블록체인 가상자산(코인 등) 운영 기업
 - 입주신청일 기준 정부/공공기관과의 협약·계약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자
 - 입주신청일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대표자

※ 해당 채무금액이 있는 경우, 입주신청 이전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입주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약속서 제출에 의하여 입주 선정 이후라도 제외대상 해당 시 입주승인 취소 및 퇴거 조치를 취함

2 입주기간 및 조건

- **입주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

구분	입주기간	세부내용
입주	2025. 8. ~ 202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와 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지원 -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진흥원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격

구분	세부내용
입주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및 역외(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서비스 보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또는 지사 대구 이전 약속서 필수 제출 ※ 선정된 기업은 진흥원과 본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센터 내로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 이전하여야 함 - 전용면적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입주실 현황 점검하여 상주 근무인력 미배치 및 활용률이 저조할 시 입주승인 취소 및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신청 제외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임대조건

구분	입주기간	세부내용
입주 부담금	2025. 8. ~ 2026. 11.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무상지원 - 센터 운영지침 변경 및 센터의 관리비가 과중될 시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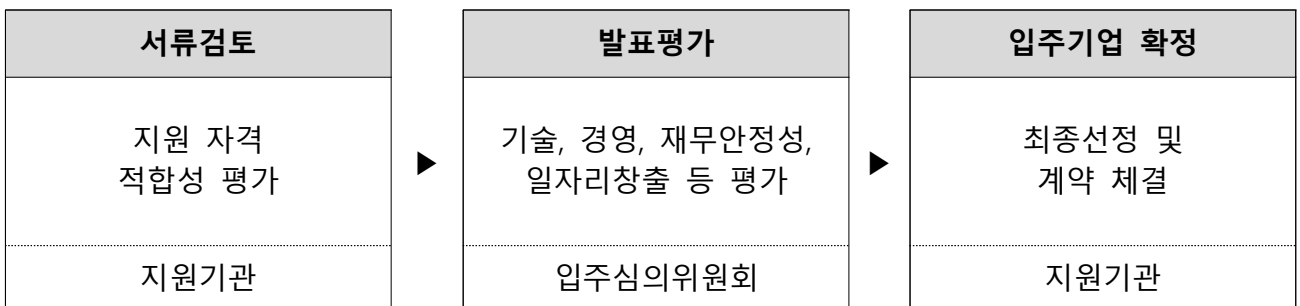
※ 센터의 이전 또는 폐쇄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사비용 등)은 기업 부담

3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센터 내 인프라 지원	- 입주 전용공간, 콘텐츠 홍보관, 회의실, 테스트베드 등 무상 지원 - 블록체인 기술개발 플랫폼 무상 활용 지원
블록체인 기업지원사업 과제지원	- 블록체인 융합기술 실증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관리 코디네이터 지원 ※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
기타	-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및 지원사업 관련 공유)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항목 : 4개 분야(기술, 경영, 재무안정성, 일자리창출) 및 기타 실적
- 평가기준 :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 산술평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 ※ 산술평균이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경영, 재무안정성, 일자리창출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2025. 7. 17(목) ~ 7. 30(수)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2025. 7. 28(월) ~ 7. 30(수) 16: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선정평가	2025. 8월 초 ~ 8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검토) 2025. 8월 첫째 주 ○ (발표평가) 2025. 8. 12(화) 예정
▼		
결과발표 및 입주실 배정	2025. 8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업 결과 안내 및 입주실 배정 ○ 지원업체 평가순위에 따라 입주호실 우선 배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2025. 8월 말 ~ 9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이후 개별 입주 안내

※ 진흥원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

- **공고기간** : 2025. 7. 17(목) ~ 7. 30(수) 16:00까지
- **접수기간** : 2025. 7. 28(월) ~ 7. 30(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 shinhw@dip.or.kr

– 방문/우편주소 :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SW융합기술지원센터(SWCC) 6층 601호, ABB기반팀 신혜원 전임

※ **기한 내 제출하여 접수증(접수번호) 발급 시 최종접수 완료**

□ 유의사항

- 메일제목 : [기업명] 2025년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신청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한 임의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서식	유의사항	비고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 한글(HWP), PDF 모두 제출	발인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	
3	기업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3	-	
4	입주 신청기준 체크리스트	붙임4	-	
5	이전 협약서	붙임5	- 역외기업 필수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7	(개인/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8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원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	- 국세청 발급서류, 회계사 공증서류만 인정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12	기타 증빙자료	-	- 심사시 우대될 수 있는 증빙자료 (지재권증빙자료, 기타 인증서 등)	

□ 문의처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BB기반팀 신혜원 전임

(연락처) 053-655-5630 / (이메일) shinhw@dip.or.kr

6 유의사항

□ 관련 규정

- 대구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일 운영지침(2024.3.12.기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내부 규정, 지침 및 기준 등

□ 일반사항

-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선정된 입주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입주의 신청, 입주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기업의 책임으로 함
- 입주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입주 이후 기재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제출하여야 함

□ 입주 운영관리

-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요청하는 실태조사 및 입주실 상시 현황점검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입주실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 전대, 질권 및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심의를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센터의 승인 없이 시설물과 설비를 신설, 증설, 변경 및 철거 등 할 수 없으며, 발견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7일 이상 부재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 심의를 통해 강제퇴거 조치함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취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